

서울특별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 안 경 위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의안번호 : 제1576호
- 제출일자 : 2020년 5월 25일
- 회부일자 : 2020년 5월 29일

2. 제 안 이 유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하므로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 요 내 용

가. 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함(안 제4조)

- 1)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2) 가로수 심고 가꾸기, 옮겨심기, 제거의 승인에 관한 사항

나.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제9조)

- 1) 위원회는 8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함.
- 2) 위원장은 도시림 업무를 담당하는 실·본부·국장이 되고, 위촉 위원은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관련 전문가, 관할지역의 주민 대표, 시민단체

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각각 2명씩 포함되도록 함.

- 3)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음.
- 4) 위원의 해촉 및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5) 위원장의 직무와 그 대행에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

다.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 제18조)

- 1)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 2)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하나, 참석한 위원의 명단은 공개함.
- 3) 회의가 끝난 후 회의록을 작성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회의록을 공개함.
- 4) 당연직 위원이 출석하지 못할 경우 도시립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 중 당연직 위원이 지명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리할 수 있음.
- 5) 위원회는 안전의 심의·자문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 출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현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6) 심의 결과 부결·부동의 된 안전은 원칙적으로 5년 이내에 동일안전으로 위원회에 재상정을 할 수 없음. 다만, 그 사유가 해소되거나 대상지 또는 주변 환경의 현격한 변화 등으로 재상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재상정이 가능함.

4.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입법예고(20. 3. 19.~4. 8.) 결과(의견없음)

5.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이 재 효)

가. 개요

-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하는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1) 조례안 제정의 타당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도시림등의 조성·관리) 및 제20조의2(도시림등의 조성·관리위원회)가 개정¹⁾되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은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내용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이에 부산, 울산, 광주광역시를 비롯하여 고양시, 김포시, 시흥시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으며, 동 조례에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음.
- 반면, 서울시는 그동안 도시림등에 관한 조례는 별도로 제정하지 않았으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공원녹지”, “도시녹화”, “가로수” 등의 심의는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에서 규정한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위원회가 그 역할을 수행해왔음.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017.6.3] [법률 제14360호, 2016.12.2, 일부개정]

2) 다른 법률 및 조례와의 관계

- 안 제3조를 보면, 도시림뿐만 아니라 생활림과 가로수까지 적용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어, 가로수의 경우는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이하 “가로수 조례”라 한다)에서 다루는 내용과 일부 중복되고 있음.
 - 현행 “가로수 조례” 제7조2(가로수 심의위원회)에 따르면 가로수 조성·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과 가로수 바뀌심기 및 신규식재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되어있지만, 본 조례안 제정에 따라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안 부칙 제2조).

3) 조례안 검토

- 안 제4조 및 제5조의 위원회 설치·기능·구성에 관한 사항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2항²⁾을 따라 규정한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음.
 - 위원회 구성에 필요한 최소인원의 경우 서울시 제출안은 법률에서 정한 6명보다 2명이 더 많은 최소 8명으로 정하였음.

2) 제20조의2(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① 도시림등의 조성·관리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20조에 따른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중 조례로 정하는 사항
3. 그 밖에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관련 전문가
2.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표 1] 도시림등 조례 심의위원회 구성(안)

구 분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제5조(구성) 제1항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상 15명 이하 (위원장:실본부국장)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5명 이하 (위원장:환경정책실장)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 (위원장:시장 위촉임명)
제5조(구성) 제3항	1.도시림등 조성관리 전문가 2.관할지역 주민 대표 3.시민단체 추천자	1.도시림등 조성관리 전문가 2.관할지역 주민 대표 3.시민단체 추천자	1.도시림등 조성관리 전문가 2.시의회추천 시의원 3.시민단체 추천자

- 인원 구성과 관련하여,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관련 전문가’,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에서 각각 최소 2명 이상을 포함하게 되어있으며, 위원장을 포함할 경우 최소 7명이 되기 때문에, 본 제정조례안의 위원회 최소인원을 8명으로 정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안 제10조제5항에서는 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며, 본 제정조례안 또한 같은 목적을 지니고 있어 시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 바, 회의 내용을 비공개할 이유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도 회의 비공개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삭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